

USMCA 지식재산권 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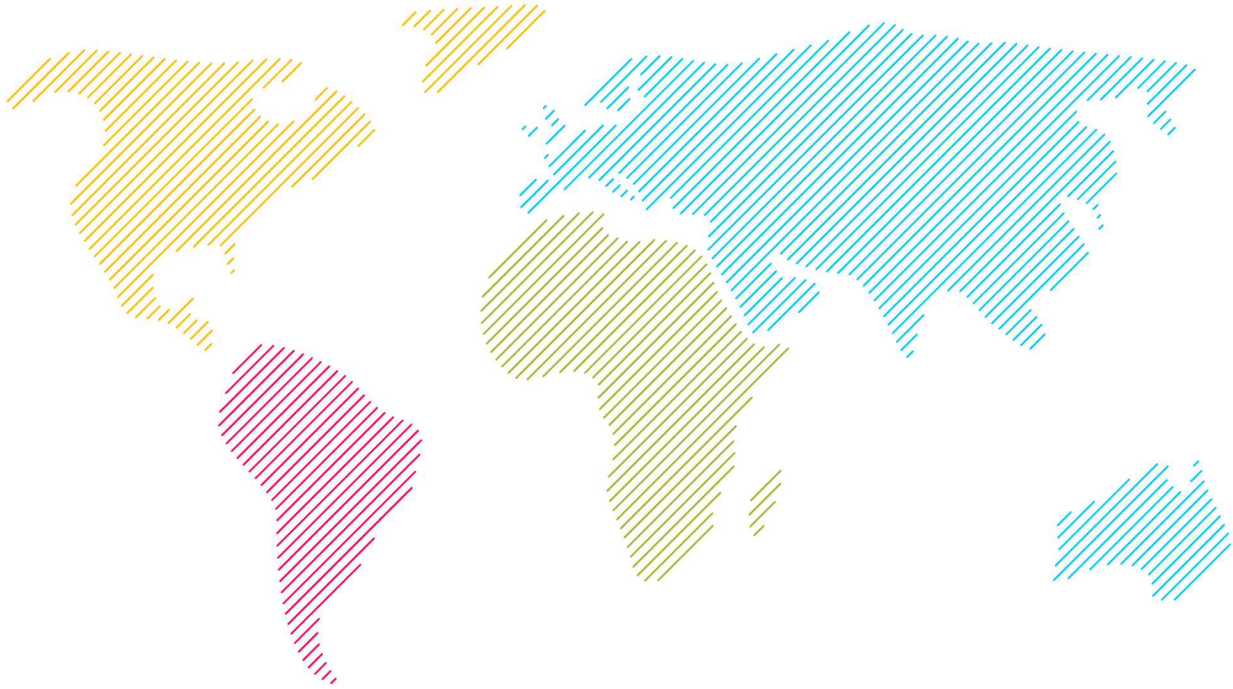
김현수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kimhs@kiep.go.kr, Tel: 044-414-1087)

USMCA 지식재산권 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요약

- ▶ USMCA는 CPTPP에서 유예되었던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들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특히 디지털 저작물 및 의약품 특허에 대한 보호를 강화
 -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보호 조항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조항을 통해 디지털 저작물들의 저작권을 강력하게 보호
 - 새로운 용도에 대한 특허 허가, 생물의약품의 자료 보호 강화,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 불합리한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 존속기간 연장 등의 조항 등을 통해 의약품, 특히 신약 특허권에 대해 강력하게 보호
- ▶ USMCA는 포괄적인 국경조치, 위조 및 불법 복제품에 대한 집행, 영업비밀 절도에 대한 공범 위한 보호 등의 강력한 지식재산권 집행 조항을 모두 포함
 - 세관당국이 수출입품과 경유물품 중 위조 상표 혹은 불법 복제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 권리자의 요청 없이도 직권조치를 통해 통관보류 및 압류를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제한을 금지하였고 위반시 민형사상의 처벌 절차 및 구제 수단 규정 의무를 부과하여 강력하게 보호하였으며 정부 차원에서 일어나는 영업비밀 침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보호
- ▶ USMCA은 타 무역협정에 비해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용자들의 정보 접근권과 이용권에 대한 강조는 빈약하여 둘 간의 불균형이 심화
 - USMCA 지식재산권 챕터는 미국이 주도하여 완성한 TPP 지식재산권 챕터의 구조와 문구가 상당히 유사하나 미국의 TPP 탈퇴 후 유예되었던 지식재산권 조항들이 일부 보강되어 모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CPTPP에 비해 보호 수준이 강화되었으며, 한미 FTA와 한-EU FTA에는 없는 영업비밀 보호 조항과 생물의약품에 대한 자료 보호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지재권 보호와 집행이 더욱 강화
 - CPTPP의 경우, 퍼블릭 도메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으며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 조항을 통해 뉴스 보도, 교육,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권을 보장하였으나 이러한 조항들이 USMCA에서는 모두 삭제됨.
- ▶ 바이오의약품 관련 조항, 영업비밀에 관한 보호 조항 등 우리나라 기체결 FTA에 존재하지 않는 조항들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
 - 특히 영업비밀 보호 강화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술 침탈 등의 이슈에 직면한 미국이 새로운 규범을 수립하려는 의도로 보이므로 앞으로의 무역협정에서도 이에 대한 강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차 례

1. 서론
2. USMCA 지식재산권 챕터의 주요 내용
3. 타 FTA 지식재산권 챕터와의 비교
4.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서론

■ 미국은 지난 해 9월 30일 출범한 USMCA의 협상 주요 목표 중 하나로 협정의 현대화를 거론하며 특히 지식재산권 협정문의 대대적 개정을 추진하여 합의를 도출

- 미 상무부의 2018년 8월 보고서에 따르면 NAFTA 지식재산권 챕터는 최근의 의약산업의 진화와 기술 혁신, 디지털 경제의 성장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지식재산권 권리자들을 온당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평가¹⁾

■ USMCA 지식재산권 협정문은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졌던 TPP 지식재산권 협정문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개정되어 미국이 TPP에서 목표했던 무역협정을 통한 지재산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립 시도가 USMCA에서도 이어짐.

- USMCA는 포괄적인 국경조치, 상업적 규모의 위조 및 불법 복제품에 대한 집행, 영화 도촬 및 위성케이블 신호 절도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영업비밀 절도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 등의 강력한 지식재산권 집행 조항을 모두 담은 첫 번째 무역협정
- 무역협정에 최초로 75년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도입하였고 의약품 특허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대부분의 지재산에 대해 높은 수준의 보호를 규정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독립된 절을 구성하여 높은 수준의 보호기준들을 제시함. 특히 국영기업, 관료 등을 특정하여 이들에 의한 영업비밀의 탈취 및 불법적인 사용을 처벌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

■ USMCA는 트럼프 행정부가 맺은 첫 번째 무역협정으로 지식재산권 협정 내용의 분석을 통해 향후 미국의 지재산 관련 통상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음.

- 본 자료에서는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협정 내 지식재산권의 변화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주요 기체결 FTA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점검하고자 함.

1) 미 상무부의 국제 지식재산 지수 평가(총점 33)에서 NAFTA의 지식재산 지수는 15.93점으로 멕시코(15.64점)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미국은 31.35점, 캐나다는 21.08점, 미국 탈퇴 전 TPP협정은 23.79점으로 분석됨.
[https://www.theglobalipcenter.com/wp-content/uploads/2018/08/023527_GIPC_IP_Index_NAFTA_Zoom-In-FINAL2.pdf](검색일: 2019. 3. 13)]

2. USMCA 지식재산권 챕터의 주요 내용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이 최초로 허락되어 발행된 이후 최소 75년의 보호기간을 규정함.

- 이는 한미 FTA, 한-EU FTA 등에서의 보호기간인 70년보다 더 연장된 것으로 현재 발효된 전세계 FTA 중 가장 긴 보호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 자연인의 수명에 기초하는 경우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최소 70년, 허락된 발행을 하지 못한 경우의 보호기간은 창작된 연도 말로부터 최소 70년으로 규정

■ [디지털 저작물 보호 강화]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보호 조항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조항을 통해 디지털 저작물들의 저작권을 강력하게 보호

- 기술적 보호조치(TPM,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²⁾를 무력화하는 직접적 행위나 무력화시키는 수단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함.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조치인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자가 단지 저작권을 보호받는 것을 넘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정당한 이용권을 제한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균형있게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
 - 이를 위해 제20.67조 제4항에서는 예외조항들을 열거하여³⁾ 디지털 저작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들을 규정하였고 디지털 산업의 빠른 기술진보 속도를 고려하여 각 회원국은 특정 유형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 행위를 인정하는 예외 조항들을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
- 권리관리정보⁴⁾를 제거 혹은 변경하거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 혹은 변경된 사실을 알고도 해당 저작물이나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⁵⁾를 4가지 유형(단순도판, 캐싱, 저장서비스, 검색서비스)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서비스제공자들의 면책 요건을 나열
 - 저장서비스 또는 검색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사실을 통보받을 경우 즉시 해당 저작물의 전송 중단 및 삭제 조치를 취하는 '통보 및 삭제(notice and takedown)' 절차를 면책의 요건으로 제시
 -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 마련을 규정
 - 대량의 정보가 취급되는 디지털 환경을 고려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감시하거나 저작권 침해행위를 능동적으로 찾을 의무는 부과하지 않음.

2)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TPMs)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거나 저작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저작물에 접근하는 행위 자체를 통제하는 접근통제적 기술조치와 저작물의 복제, 방송, 배포하는 행위 등을 통제하는 이용통제적 기술조치로 구분됨.

3) USMCA에서의 예외조항들은 한미 FTA와 동일

4) 권리관리정보(Right Management Information, RMI)란 저작물, 저작물의 권리자, 이용조건 등을 식별하는 정보로서 저작물에 부착되거나 전송에 수반되는 것을 지칭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우리나라 현행법령상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들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또는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들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로 정의됨.(저작권법 제23조30호)

■ [의약품 특허 보호 강화] 새로운 용도에 대한 특허 허가, 생물의약품의 자료 보호 강화,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 불합리한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 존속기간 연장 등의 조항 등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의약품, 특히 신약 특허권에 대해 강력하게 보호

-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라는 특허의 기본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에 알려진 물질에 대한 새로운 용도, 사용 방법, 혹은 공정에 대한 특허를 허용
 - 기존 의약품의 핵심 성분, 용도, 제조법 등을 구분하여 별도의 특허권을 얻곤 했던 의약산업에서 특허 활용이 용이
- 신규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제출한 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을 5년간 금지하였고, 바이오의약품⁶⁾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제출한 자의 동의 없이 원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10년간 금지
 - 통상적으로 바이오의약품과 일반 화학합성의약품을 구분하지 않고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정보에 대해 3년에서 6년의 보호 기간을 설정하는데 반해 USMCA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을 위한 별도의 조항을 통해 더 긴 기간의 보호를 보장
 - 미국은 2010년 ‘바이오의약품 가격 경쟁 및 혁신에 관한 법’(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을 통해 입법된 생물의약품에 대한 자료 보호⁷⁾를 최초로 무역협정에도 도입⁸⁾
 - 화학합성의약품에 비해 고분자구조를 가지고 있고 약효가 열이나 오염에 민감한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제3자가 원용하여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목적⁹⁾
-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허가 신청시 신청사실을 최초 신약의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특허권자가 필요에 따라 특허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
 - 1984년 미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이후 미국이 체결한 FTA를 통해 여러 국가에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이 체결하는 FTA 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조항임.
 - 의약품 시판 허가 심사 업무에 특허에 대한 통지 및 구제절차를 연결시켜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
- 특허 등록 과정이 불합리하게 지연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특허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허존속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의약품의 시판허가기간으로 인해 특허기간이 불합리하게 단축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특허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
 - 출원일로부터 5년 또는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 후 3년 중 더 늦은 시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불합리하게 지연되었다고 정의
 - 특허권자가 과도한 등록절차로 인한 잠재적 피해로부터 강력한 보호를 받고 특허심사실무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으나, 특허 만료 시점을 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지리적 표시 남용 제한] 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s) 등록에 대한 취소 신청 절차를 마련하였고 취소 가능사유를 자세히 열거함으로써 지리적 표시의 남용으로 인해 일반명사 사용에 과도한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규정

6) 생물의약품이라고도 불리는 바이오의약품은 우리나라 현행법령상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하며,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제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됨.(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78호, 2018.10.26., 일부 개정) 2017년 기준 바이오의약품의 수출액은 1조 5,470억원 (전체 의약품 수출의 33.6%), 수입액은 1조 1,784억원 (전체 의약품 수입의 18.7%) 규모임.

7) ‘생물의약품 가격 경쟁 및 혁신에 관한 법’에서는 생물의약품의 자료 보호를 12년 동안 인정하고 있음. 이중 신약 개발자의 자료를 제3자가 원용하는 행위를 금하는 기간은 4년이며 이후 8년간은 제3자가 신약 개발자의 자료를 원용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8) 미국은 TPP에 일반 의약품은 5년의 자료 보호(제18.50조), 생물의약품은 8년의 자료 보호를 보장하는 조항(제18.51조)을 삽입하였으나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면서 해당 조항들은 유예됨.

9) 박준석(2015) p.20-21

- GI 등록 신청시 회원국은 신청사실을 공표하고 충분한 기간 동안 이의 제기를 받은 후 청원의 결과에 따라 출원을 결정하도록 하였고, 해당국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일반적인 명칭들은 GI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
- 많은 협정에서 일반화된 명칭을 GI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일반화된 명칭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데 반해 USMCA에서는 일반화된 명칭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
 - △ 해당 명칭의 사전, 언론 등에서의 용례가 어떠한지 △ 해당 물품이 회원국 내에서 어떻게 마케팅되고 있는지 △ 해당 명칭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관련법령 등에 근거하여 사용되는지 △ 해당 물품의 대부분이 GI 상의 지역으로부터 수입 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제시

■ [강력한 지식재산권의 집행] USMCA는 대체적으로 한미 FTA와 CPTPP와 유사한 집행 조항들을 가지고 있으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해서는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집행을 규정

- 세관당국이 수출입품과 경유물품 중 위조 상표 혹은 불법 복제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 권리자의 요청 없이도 직권조치를 통해 통관보류 및 압류를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미국 영화산업계가 자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큰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맺은 FTA에서 미국은 영화 도찰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조항을 삽입
- 영업비밀 보호조항은 미국의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와 통일영업비밀법(Uniform Trade Secrets Act) 등을 모델로 함.¹⁰⁾
 -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제한을 금지하였고 위반시 민형사상의 처벌 절차 및 구제 수단 규정 의무를 부과하여 강력하게 보호
 - 영업비밀 절도에 대한 보호 조항에 “국영기업에 의한 절도”란 표현을 삽입하였고 공식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정부관료의 영업비밀 공개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일어나는 영업비밀 침탈 행위에 대해 보호
 - 자발적인 영업비밀 라이선싱 및 이전행위의 방해 금지하여 권리자들의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하였고 소송절차 중에 사법부에 의해 영업비밀 관련 정보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보호

■ [지재권에 비위반제소 허용] USMCA는 상품, 농업, 원산지, 무역원활화 조치, SPS, TBT, 정부조달,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비위반제소¹¹⁾ 허용

- TRIPs 협정 발효 당시 WTO 회원국들은 지식재산권을 비위반제소 적용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후 계속 유예되어 왔으며, 지난 2017년 12월에 열린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차기 각료회의까지 유예가 재연장¹²⁾

10) “A need-to-know guide on IP in the U.S.-Mexico-Canada Agreement”(검색일: 2019. 3. 9)

11) 비위반제소란 협정문의 조항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회원국들이 협정에서 기대하는 이익을 무효화 혹은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제소를 할 수 있는 제도임.

12) “Briefing notes: TRIPs/Non-violation”(검색일: 2019. 3. 22)

3. 타 FTA 지식재산권 챕터와의 비교

- USMCA 지식재산권 챕터는 미국이 주도하여 완성한 TPP 지식재산권 챕터의 구조와 문구가 상당히 유사하나 미국의 TPP 탈퇴 후 유예되었던 지식재산권 조항들이 일부 보강되어 모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CPTPP에 비해 보호 수준이 강화되었으며, 한미 FTA와 한-EU FTA에는 없는 영업비밀 보호 조항과 생물의약품에 대한 자료 보호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지재산권 보호와 집행이 더욱 강화
-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한미 FTA는 USMCA와 유사한 수준으로 저작권 보호를 보장하고 있으나 CPTPP에서는 다수의 저작권 보호 관련 규정들이 유예되었으며, CPTPP는 정보 이용권 보장의 중요성을 명시하여 USMCA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작권과 정보 이용권 간의 균형을 모색
 - USMCA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보호기간이 허락된 발행의 경우 최소 75년으로 늘어남.
 - 한미 FTA와 한-EU FTA는 USMCA와 비슷한 수준인 70년의 보호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CPTPP의 보호기간은 관련 조항이 유예되면서¹³⁾ TRIPs 규정에 준하는 50년임.
 -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및 권리관리정보의 제거 또는 변경에 대한 규정들은 네 협정 모두에 유사한 형태로 포함되어 있으나 CPTPP에서는 관련 조항 유예
 - USMCA에서는 강력한 저작권 보호 규정들에 비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권과 이용권에 대한 강조는 빈약하여 둘 간의 불균형이 심화
 -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보호조치의 우회를 허용하는 상황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였으나 저작권 일반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미흡
- [의약품 특허] 한미 FTA는 바이오의약품의 자료 보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약품 특허권 보호 조항들을 USMCA의 수준으로 담고 있으나 CPTPP에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유예되었고 한-EU FTA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정보에 대해 5년의 보호 기간 규정
 - CPTPP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의 자료 보호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였으나 해당 조항이 유예되면서 일반의약품과 동일하게 5년으로 변경되었고, 새로운 용도에 대한 특허 적격성, 불합리한 지연으로 인한 특허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조항들도 유예됨에 따라 제18.53조에 규정된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제외하면 미국이 최근의 양자 무역협정에서 삽입을 주장하는 의약품 관련 특허 규정 대부분이 동결
 - 유예된 CPTPP 제18.51조에서 바이오의약품의 자료 보호 기간을 8년 혹은 조건부 5년으로 규정하였고 바이오의약품의 범주를 바이오의약기술로 만들어진 단백질류로 한정된 것에 비해 USMCA에서는 10년의 자료 보호 기간을 규정하였고 단백질류 뿐 아니라 바이러스, 혈청, 혈액 및 그 부산물, 독소 및 항독소 등을 바이오의약품이라 명시적으로 정의함으로써 CPTPP 유예조항보다 더욱 강화

13) 유예된 CPTPP 제18.63조에서는 저작물과 실연 및 음반에 대한 보호기간을 70년으로 규정

- [지리적 표시] 한미 FTA에는 세이프하버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선행상표에 대한 인정 및 이의제기 절차 수립 조항만이 존재하는 반면 USMCA는 CPTPP와 유사한 수준의 GI 인정 관련 세이프하버 조항 또한 규정하고 있어 GI의 사용가능 범위를 제한
- [집행] 한미 FTA, 한-EU FTA, CPTPP에서도 직권에 의한 국경조치, 통보 후 삭제 시스템 등을 포함하여 강력한 지식재산권 집행 조항들을 담고 있으나, USMCA에서는 형사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영업비밀에 대한 강력한 보호 조항들을 추가적으로 규정
 - TRIPs 협정에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상업적 규모'로 행할 경우 형사 절차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이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하는 행위로 해석되지만¹⁴⁾ USMCA는 이를 금전적 이익을 목적하지 않더라도 권리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로 포괄하여 집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이는 CPTPP와¹⁵⁾ 한미 FTA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지만¹⁶⁾ 한-EU FTA에서는 상업적 규모를 금전적 이익을 목적하는 행위로 한정함.
 - 또한 USMCA에서는 CPTPP와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 대상에 지재권 침해에 대한 방조(aiding and abetting) 행위도 포함하고 있어 처벌 대상이 제2차적 책임으로까지 확대되었는데¹⁷⁾ 이는 한미 FTA나 한-EU FTA에는 존재하지 않음.
 - 영업비밀을 특정한 집행 규정은 한미 FTA와 한-EU FTA에는 존재하지 않음. CPTPP 내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집행 규정에 비해 USMCA에서는 △ 민사절차 및 구제 마련 △ 민사소송 중 영업비밀 보호 △ 영업비밀 라이선싱 방해 금지 △ 정부관료에 의한 영업비밀 공개 및 사용금지 조항이 추가
- [지재권에 비위반제소 허용 여부] CPTPP에서는 비위반제소 허용 대상에 지식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한미 FTA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포함하고 있으나 각주를 통해 WTO에서 지재권에 대한 비위반제소를 허용하기로 합의하기 전까지는 유예하기로 결정
 - 전술한 바와 같이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유예가 선언되었기 때문에 차기 각료회의에서 다시금 논의될 예정이나 여전히 회원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

14) Lee(2017) p.10-11

15) CPTPP 제18.77조

16) 한미 FTA 제18.10조 26항

17) Lee(2017) p.12

표 1. USMCA와 주요 무역협정 지식재산권 챕터간 비교

구분		USMCA	CPTPP	한미 FTA	한-EU FTA
저작권	저작권 보호기간	제20.63조 허락발행시 발행 이후 75년 이상 그 외 70년 이상	제18.63조 저자 사후 혹은 발행 이후 70년 이상 (CPTPP에서 유예)	제18.4조 4항 저자 사후 혹은 발행 이후 70년 이상	제10.6조 저자 사후 70년 이상
	기술적 보호조치	제20.67조	제18.68조 (CPTPP에서 유예)	제18.4조 7항	제10.12조
	권리관리정보	제20.68조	제18.69조 (CPTPP에서 유예)	제18.4조 8항	제10.13조
	퍼블릭 도메인	-	제18.15조	-	-
특허	새로운 용도에 대한 특허	제20.36조 2항	제18.37조 2항 (CPTPP에서 유예)	제18.8조 1항	-
	바이오의약품 자료 보호	제20.49조 자료 보호기간 10년	제18.51조 자료 보호기간 8년 or 5년+ α (CPTPP에서 유예)	-	-
	허가 특허 연계	제20.51조	제18.53조	제18.9조 5항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 존속기간 연장	제20.44조	제18.46조 (CPTPP에서 유예)	제18.8조 6항	-
상표	지리적 표시 인정 관련 가이드라인	제20.32조	제18.33조	-	-
집행	집행 대상 확대	제20.85조	제18.77조	-	-
	직권에 의한 국경조치	제20.84조	제18.76조	제18.10조 22항	제10.67조 1항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면책	제20.89조	제18.82조 (CPTPP에서 유예)	제18.8조 30항	제10.62~65조
영업비밀	영업비밀 침해시 형사절차	제20.72조	제18.78조 2항	-	-
	영업비밀 침해시 민사절차	제20.71조 제20.76조	-	-	-
	정부관료에 의한 영업비밀 공개 및 사용금지	제20.78조	-	-	-
기타	지재권에 대한 비위반제소 허용	제31.2조 c항	-	- (WTO의 결정이 있기까지 유예)	-

4. 시사점 및 결론

■ USMCA는 무역협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자국 국내법을 다른 나라로 이식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등 기존 NAFTA가 다루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조항들이 모두 미국 국내법을 모델로 신설
- ‘바이오의약품 가격 경쟁 및 혁신에 관한 법’, ‘영업비밀보호법’ 등 근래 제정된 미국 국내법의 핵심 내용들을 대거 협정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와 관련한 상대국의 제도 및 규범의 미국화가 불가피

■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으나 이를 이용한 권리 남용에 대한 우려와 새로운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권의 저해 가능성이 증가

- 의약품 특허 보호 강화 조항들을 통해 최초 신약 특허권자들이 ‘에버그리닝’ 전략을 사용하여 특허존속기간을 다양한 형태로 연장시킴으로써 제네릭 의약품의 도입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음.¹⁸⁾
- 또한 바이오의약품 자료에 대한 긴 보호기간으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고 관련 산업의 경쟁이 줄어들 우려가 존재¹⁹⁾
- USMCA와 비슷한 지재권 보호 수준을 규정한 CPTPP는 정보 이용권 보장의 중요성을 명시하여 지식재산권과 이용권 간의 균형을 모색
 - CPTPP의 경우, 퍼블릭 도메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으며²⁰⁾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 조항을 통해 뉴스 보도, 교육,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권을 보장하였으나²¹⁾ 이러한 조항들이 USMCA에서는 모두 삭제됨.

■ USMCA 지재권 협정 중 주요 쟁점사항인 바이오의약품 관련 조항은 우리나라 기체결 FTA에는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

- 의약품 자료 보호가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해 독자적인 자료 보호 기간을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의약품에 대한 자료에 대해 직접적으로 독점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재심사 제도²²⁾를 통해 우회적으로 보호
 - 자료 독점권을 통한 직접적인 보호와 달리 재심사 제도를 통한 우회적인 보호는 재심사 여부의 판단이 식약처장의 재량에 의거할 여지가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

18) 실제로 미국에서도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통해 신약 특허권자들이 특허권을 지속적으로 연장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2003년 메디케어 의약품의 개선 및 현대화 법(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 등을 통해 해당 제도를 개선시키고자 함.[박실비아 (2016) p.96]

19)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그 당시 제안되던 12년에서 14년의 바이오의약품 자료 보호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신약개발 유인을 오히려 저해시킬 수 있다고 주장[Federal Trade Commission(2009) p.3-24]

20) CPTPP 제18.15조

21) CPTPP 제18.66조

22) 신약의 경우 시판허가로부터 6년 후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는데 이때 ‘최초 허가 시 제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서 이와 동등범위 이상의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의약품 자료 보호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옴.(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2018-95호, 2018.11.27., 일부개정)

- 의약품 자료 보호의 법적 근거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식약청 고시라는 한계가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률에 근거한 자료 독점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증가²³⁾
- 한편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자료 보호는 현재 미국에서 국회 비준을 앞두고 야당의 반대가 있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²⁴⁾

■ TPP에서부터 새로이 도입된 영업비밀에 관한 보호 조항들은 한층 강화되어 협정에 포함됨. 향후 체결될 협정들에서 영업비밀 보호 관련 규범들이 어떻게 변할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요구됨.

- 영업비밀 보호 강화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술 침탈 등의 이슈에 직면한 미국이 새로운 규범을 수립하려는 의도로 보이므로 앞으로의 무역협정에서도 이에 대한 강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민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왔지만 엄격한 영업비밀 요건의 적용과 낮은 손해배상액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음.²⁵⁾
 - 작년 말 관련법 개정안이 가결되어 올 6월부터 영업비밀 요건이 완화되며²⁶⁾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예정임²⁷⁾. 이를 통해 비밀정보 범위의 확대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
 - 개정법 하에서 영업비밀 보호대상의 범위와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동 법의 실효성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 향후 추가 분석이 필요. KIEP

23) 박준석(2015) p.31

24) 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라처드 닐 의원 등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4월 9일 USTR에 USMCA 내 생물 의약품에 대한 자료 보호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냄. 이들은 2007년 5월 초당적으로 합의된 '신통상정책'의 내용을 환기시키며 생물 의약품 신약에 대한 과도한 권리 보호로 인해 시장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들이 값싼 의약품에 접근이 어려워질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Neal sends letter to Lighthizer outlining Democrats' concerns with the renegotiated NAFTA"(검색일: 2019. 4. 11)]

25) "개정 특허법 ·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권리자 보호 강화"(검색일: 2019. 3. 14)

26) 과거 영업비밀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로 정의되었던 것이 2015년 개정을 통해 상당한 노력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바뀌었고 금번 개정에서는 합리적인 노력이란 문구 자체를 삭제하여 노력 여부를 불문하고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게 됨.

27)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 손해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으로 산정될 수 있게 됨.

참고문헌

[국문자료]

- 박실비아. 2016. “의약품의 접근성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 동향 고찰” 보건복지포럼(2016.07) p.96
- 박인희. 2018. “CPTPP 체결과 의약품의 특허 보호 - ‘의약품과 관련된 조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6권 제3호 p.122,126-127
- 박준석. 2015. “의약허가와 관련한 자료독점권의 고찰 - TPP 협정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통상법률 제126호 p.20-21,31

[영문자료]

- Federal Trade Commission. 2009. “Emerging Health Care Issues: Follow-on Biologic Drug Competition” Federal Trade Commission Report p.3-24
- J.Lee. 2017. “Digital Copyright in the TPP”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Faculty of Law Research Paper No. 2017-24 p.10-12

[온라인 자료]

- “개정 특허법 ·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권리자 보호 강화” 리걸타임즈 (2019. 1. 7)
<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48>(검색일: 2019. 3. 14)
- “A need-to-know guide on IP in the U.S.-Mexico-Canada Agreement” Lexology (2018. 10. 2)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0a4b8385-581e-4031-ada1-d4aca9943540>(검색일: 2019. 3. 9)
- “Briefing notes: TRIPS/Non-violation” WTO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c11_e/briefing_notes_e/bftrips_e.htm(검색일: 2019. 3. 22)
- “Neal sends letter to Lighthizer outlining Democrats’ concerns with the renegotiated NAFTA” Ways & Means Committee (2019. 4. 9)
<https://waysandmeans.house.gov/media-center/press-releases/neal-sends-letter-lighthizer-outlining-democrats-concerns-renegotiated>(검색일: 2019. 4. 11)
- “U.S. Chamber analysis highlights importance of modernizing NAFTA’s IP chapter” Global IP Center
https://www.theglobalipcenter.com/wp-content/uploads/2018/08/023527_GIPC_IP_Index_NAFTA_Zoom-In-FINAL2.pdf(검색일: 2019. 3. 13)

부록. USMCA 지식재산권(제20장) 주요 내용

부록 표 1. USMCA 지식재산권(제20장) 주요 내용

조문		주요내용
Section A	일반조항	• (목적) 기술 혁신, 기술의 이전, 기술적 지식에 대해 생산자와 이용자 간 호혜적인 이익, 사회적·경제적 후생의 증진, 균형적인 권리와 의무 규정 • TRIPs와 공중보전에 관한 선언 재확인 • PLT(Patent Law Treaty) 또는 PLT의 목적에 준하는 조약 가입에 노력 • (투명성) 지재권 등록과 지재권 관련 제도 규범 개선 여부에 대한 통보 강화
Section B	협력	• (지재권 위원회) 위원회의 역할로는 △ 지재권을 통해 혁신과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의 공유 △ 국경조치 강화를 위한 협력 △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보의 공유 △ 특허 소송 절차의 공정성 증진을 위한 협력 △ GI 보호에 대한 회원국 간 합의 도출
Section C	상표	• (보호기간)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10년 • (유명상표 보호) 유명상표를 침해하는 등록 제한 • (도메인 이름) 도메인 이름 권리자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도메인 이름의 상업적 악용 제재
Section D	국가명	• 국가명의 상업적 이용 시 처벌
Section E	지리적 표시	• (이의제기 절차) 지리적 표시 등록 이의제기 절차에 충분한 기간을 보장 • (일반명사 등록 금지) 널리 쓰이는 일반적인 명칭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 금지 및 일반적인 명칭을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Section F	특허와 비공개 실험 및 기타 자료	• (특허적격성) 새로운 용도, 사용방법, 공정 및 식물로부터의 발견에 대해서도 특허 허여 • (투명성) 특허 출원 데이터의 공표를 통해 투명성 증진 • (불합리한 지연에 따른 특허 존속기간 연장) 출원일로부터 5년 또는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 후 3년 중 더 늦은 시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연에 따른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 • (자료 보호)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제출한 자의 동의 없이 제 3자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 농화학 제품은 10년, 화학합성의약품은 5년, 바이오의약품은 10년간 보호
Section G	산업디자인	• (보호 기간) 산업디자인의 보호기간은 15년 • (보호 범위) 부분디자인에 대해서도 등록 허용
Section H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 (보호 기간) 자연인의 수명 기초 시 사후 70년, 자연인의 수명 외 기초 시 최초 발행 후 75년 또는 발행허락이 안된 경우 70년 • (기술적 보호조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무력화하는 수단을 배포하는 행위 시 처벌 • (권리관리정보) 권리관리정보의 제거 혹은 변경, 권리관리정보가 제거 혹은 변경된 저작물이나 권리관리정보 자체를 배포하는 행위 시 처벌

조문		주요내용
Section I	영업비밀	• (집행)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 (소송 중 비밀보장) 소송 혹은 규제절차 중 사법부나 정부 관료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 시 처벌 • (영업비밀 라이선싱) 영업비밀의 자발적 라이선싱 방해 금지
Section J	집행	• (국경조치) 수출입품과 경유물품 중 위조 상표 또는 불법 복제품에 대해서 세관당국에게 직권 부여 • (영화 도촬) 극장 내에서 영화 도촬 행위에 대해 형사상 처벌 • (위성케이블 신호 절도) 위성케이블 신호 절도 및 이를 위한 도구의 제조, 배포 등의 행위에 대해 형사상 처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요건으로 노트스 앤 테이크다운 제도 채택